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38

발의연월일: 2021. 6. 30.

발 의 자:김경협·강훈식·기동민

김민기 • 김병기 • 김정호

노웅래 • 박성준 • 유정주

윤건영 • 윤영찬 • 이형석

인재근 · 임호선 · 조승래

조정식 · 홍기워 의위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으로 성매매, 성폭력범죄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,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 년으로 연장되었음.

징계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시정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, 징계 시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직원을 다른 국가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임.

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, 공직 내 성비위 근절 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1항).

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3년[금품 및 향응 수수(授受), 공금의 횡령(橫領)·유용(流用), 비밀누설, 정치 관여,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]이"를 "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- 1.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0년
 -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
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 - 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- 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- 2.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5년가. 비밀누설, 정치 관여 또는 직권남용
 - 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

3.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: 3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징계 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 시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징계 사유의 시효) ① 징	제29조(징계 사유의 시효) ①
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	
생한 날부터 <u>3년[금품 및 향응</u>	<u>다음 각 호의 구분</u>
수수(授受), 공금의 횡령(橫領)	<u>에 따른 기간이</u>
•유용(流用), 비밀누설, 정치	
관여,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	
<u>년]이</u> 지나면 할 수 없다.	
<u><신 설></u>	1.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
	<u>10년</u>
	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
	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
	에 따른 금지행위
	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
	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
	<u>따른 성폭력범죄</u>
	<u>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</u>
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
	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
	<u>상 성범죄</u>
	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
	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<u><신 설></u>	2.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
5년

가. 비밀누설, 정치 관여 또
는 직권남용
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
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경우

<신 설>
3.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
는 경우: 3년
2・③ (생 략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